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 즉시 시정 중심 감독과 컨설팅 병행, 영세사업장 노동질서 확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20.(월)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 * ▲ (구성) (의장) 주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청장), (위원) 시·도 노동·산안 담당 부서장 중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주관·참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 부서장
- ▲ (운영내용) ▲지역 내 감독 정책 및 효율적 감독방안 수립,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정부간 협업 방안(합동 사업 및 감독관 교육·역량강화 등) 및 계획의 수립, ▲우수사례 공유 등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 개요

별첨.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 전체본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류한석 (044-202-7826)
		담당자	주무관	현원규 (044-202-7827)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강승훈 (044-202-8914)

❖ 「노동감독법 직무집행법」 시행(‘26.12.8.)에 대비, 중앙-지방 협업 체계를 사전 구축하여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질서 확립 및 지방정부 감독 기반 마련

❖ **(협력체계 구축)**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가 함께 지역별 취약 분야 발굴 및 노동감독·산업안전 예방점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노동감독관법」 제32조)

→ 법 시행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협력 사업을 통해 지방청·대표지청과 상시적인 협의 및 지원 체계 구축

❖ **(현장감독 강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및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 강화***

* 노무지도 방식(완화된 조치 기준) → 법 위반 즉시 시정 등 감독 본연의 역할 강화

❖ **(현장밀착형 컨설팅 확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노동감독 사각지대 (업종·분야) 발굴하여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 집단 컨설팅 제공**

→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로 예방 효과 제고

< 개편 전후 비교 >

	< 현장예방점검의 날 >	<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
협력체계	<p>본부-지방청-지청 간 역할 분담 및 지역 협단체 위주 협력 실시</p> <p>※ '25년 4차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자치단체와 협력</p>	<p>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노동관서-자치단체 중심의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 운영</p> <p>※ 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상시 협력·협의 체계(거버넌스) 마련</p>
현장감독	<p>자율개선, 노무관리 지도 등 계도 중심의 완화된 점검</p> <p>※ 감독 범위가 협소하고, 임금체불 외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수준의 완화된 기준 적용</p>	<p>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사업장 감독</p> <p>※ 법 위반 적발 및 즉각적 시정 등 위반 사항 해결 역할 강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p>
컨설팅	<p>지방노동관서 중심의 집단컨설팅 진행</p> <p>※ 협·단체와 협력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후 설명회 등 실시</p>	<p>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분야·업종 선정 → 컨설팅 및 사후관리 실시</p> <p>※ 자치단체가 지역·취약분야 선정에 주도적 역할</p>